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46 발의연월일: 2020. 10. 26.

발 의 자 : 양이원영・이수진(비) • 도종환

이탄희 • 우원식 • 이용빈

송옥주・유정주・윤미향

장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에 경유자동차가 활용되는 것을 제한하 고 있음.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7234호, 2020.4.7.) 으로 택시와 유사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등장이 예상되며 해당 영업 을 영위하려는 경우 신규 경유차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상에 플랫폼운 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 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증차 또 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 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 우

-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 3.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8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 자동차의 사용 제한) -----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 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 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